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7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이병도,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김인제,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승진, 박영한,
봉양순, 서상열, 신복자,
유정인, 윤기섭,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정준호, 한·신,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7명)

1. 제안이유

-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문화, 체육활동 지원 강화로 청년 참여 기회를 확대함

2. 주요내용

- 가. 고립청년에 대한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6호 신설).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립청년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립청 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 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u>6.</u>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8조(지원사업)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고립청년의 문화·예술·여가</u> <u>· 체육활동 등의 지원사업</u></p> <p><u>7.</u>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